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다올투자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6. 5.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40백만원 부과
임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1명
직원 (5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3명 견책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 회사는 #####.##.##.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총 O건,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